

하나 행복디자인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핵심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주요 변경내용

1)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혜택 변경: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

2)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율 변경: 22%에서 16.5%로 인하

단,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16.5%에서 13.2%로 인하 (지방소득세 포함)

3) 일부 인출 불가: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을 과세대상금액 또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하는 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전으로 일부 인출 제어

2. 시행예정일: 2014년 1월 20일

3. 변경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고
1.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✓ 상품 특징 -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%까지 소득공제 가능 (이하 생략) ✓ 가입 대상: (생 략)	1.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✓ 상품 특징 -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%까지 세액공제 가능 (좌 등) ✓ 가입 대상: (좌 등)	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개정내용 반영 반영

✓ 가입 금액: (생 략) ✓ 납입 한도: (생 략) ✓ 적립 기간: (생 략) ✓ 연금 수령 요건: (생 략) ✓ 연금 수령 한도: (생 략) ✓ 연금외 수령: (생 략) ✓ 일부 인출: 적립기간 및 연금지급기간 중 가능. 단,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출순서 ①과세제외금액(당해연도납입금액→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), ②과세대상금액(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+운용수익금)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됨 ※ 당해연도 납입금액 중 일부 인출 시 ①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를 계산하며, ②그 잔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✓ 소득공제(2013년 기준):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% (한도 400만원) 단, 연금수령이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입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간주되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✓ 보수 및 수수료: (생 략)	✓ 가입 금액: (좌 등) ✓ 납입 한도: (좌 등) ✓ 적립 기간: (좌 등) ✓ 연금 수령 요건: (좌 등) ✓ 연금 수령 한도: (좌 등) ✓ 연금외 수령: (좌 등) ✓ 일부 인출: 적립기간 및 연금지급기간 중 가능. 단,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출순서 ①과세제외금액(당해연도납입금액→<u>세액공제</u> 받지 않은 납입금액), ②과세대상금액(<u>세액공제</u> 받은 납입금액+운용수익금)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됨 ※ <u>일부 인출에 따른 국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시까지 일부 인출을 제한합니다. (국세청의 유권해석 확정시 연금정보 수령지로 통보 예정)</u> ✓ <u>세액공제: 당해연도 납입액(한도 400만원)에 대하여 가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2% 세액공제함. 단,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가능</u> ✓ 보수 및 수수료: (좌 등)	국세청 최종 유권해석 대기 상태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개정내용 반영																				
2.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납입시</th><th colspan="2">인출시</th></tr><tr><th>연금수령시</th><th>연금외수령시</th></tr><tr><td>세제종류</td><td>소득공제 혜택</td><td>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</td><td>기타소득세 주 2) (22%, 지방소득세 포함)</td></tr></table>	구 분	납입시	인출시		연금수령시	연금외수령시	세제종류	소득공제 혜택	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	기타소득세 주 2) (22%, 지방소득세 포함)	2.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납입시</th><th colspan="2">인출시</th></tr><tr><th>연금수령시</th><th>연금외수령시</th></tr><tr><td>세제종류</td><td><u>세액공제</u></td><td>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</td><td>기타소득세 주 2) (<u>16.5%</u>, 지방소득세 포함)</td></tr></table>	구 분	납입시	인출시		연금수령시	연금외수령시	세제종류	<u>세액공제</u>	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	기타소득세 주 2) (<u>16.5%</u> , 지방소득세 포함)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나목의 개정내용
구 분			납입시	인출시																		
	연금수령시	연금외수령시																				
세제종류	소득공제 혜택	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	기타소득세 주 2) (22%, 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										
구 분	납입시	인출시																				
		연금수령시	연금외수령시																			
세제종류	<u>세액공제</u>	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	기타소득세 주 2) (<u>16.5%</u> , 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										

주1) 연금소득세 = {소득공제 받은 납입액(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내)+운용수익금} X 연금소득세율*

* 연금소득세율 (연령별 차등적용)

구 분	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	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	만80세 이상
연금소득 세율	5.5%	4.4%	3.3%

주2) 기타소득세 = {소득공제 받은 납입액(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내)+운용수익금} X 기타소득세율**

**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및 일부 인출시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, 분리과세)

- ① 천재지변
-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
-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④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- ⑤ 은행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. 다만,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및 일부인출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✓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

구 분	과세 대상 여부	연금 수령시 과세	연금외 수령시 과 세
소득공제 받은 납 입액	○	연금소득세	기타소득세
운용 수익금	○	연금소득세	기타소득세

주1) 연금소득세 = {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(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)+운용수익금} X 연금소득세율*

* 연금소득세율 (연령별 차등적용)

구 분	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	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	만80세 이상
연금소득 세율	5.5%	4.4%	3.3%

주2) 기타소득세 = {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(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)+운용수익금} X 기타소득세율**

**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, 분리과세)

- ① 천재지변
-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
-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④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- ⑤ 은행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. 다만,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및 일부인출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✓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

구 분	과세 대상 여부	연금 수령시 과세	연금외 수령시 과 세
<u>세액공제</u> 받은 납 입액	○	연금소득세	기타소득세
운용 수익금	○	연금소득세	기타소득세

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			X			비과세														
(이하 생략)									(좌 등)											
3. 상품 특징 ✓ 상품 종류: (생략) ✓ 상품 개요: (생략) ✓ 투자대상 펀드: (생략) ✓ 투자자예탁금: (생략) ✓ 입금: (생략) ✓ 인출 - 보유상품을 한 개 또는 다수로 지정하여 환매할 수 있음 - 다수의 상품을 일괄 환매하여 인출할 경우 매도한 개별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 를 매입한 후 환매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을 지급 -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※ 당해연도 납입금액 중 일부 인출 시 ①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를 계산하며, ②그 잔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✓ 종목전환 및 매매: (생략) ✓ 평가금액: (생략) ✓ 납입금액: (생략) ✓ 연금 개시 신청: (생략) ✓ 환매수수료: (생략) ✓ 양도 및 담보제공: (생략)									3. 상품 특징 ✓ 상품 종류: (좌 등) ✓ 상품 개요: (좌 등) ✓ 투자대상 펀드: (좌 등) ✓ 투자자예탁금: (좌 등) ✓ 입금: (좌 등) ✓ 인출 - 보유상품을 한 개 또는 다수로 지정하여 환매할 수 있음 - 다수의 상품을 일괄 환매하여 인출할 경우 매도한 개별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 를 매입한 후 환매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을 지급 -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※ 일부 인출에 따른 국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시까지 일부 인출을 제한합니다. (국세청의 유권해석 확정시 연금정보 수령지로 통보 예정) ✓ 종목전환 및 매매: (생략) ✓ 평가금액: (생략) ✓ 납입금액: (생략) ✓ 연금 개시 신청: (생략) ✓ 환매수수료: (생략) ✓ 양도 및 담보제공: (생략)									국세청 서면 답변에 따른 내용 반영		
4. 가입시 유의사항									4. 가입시 유의사항											

✓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내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,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✓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✓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✓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행에 “연금수령 개시신청서”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. ✓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하며,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. ✓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저축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(부분 인출 포함) 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”(세무서 발급) 및 “연금납입확인서”(해당 연금계좌 취급자 발급)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배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 (이하 생략)	✓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내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,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✓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✓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✓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행에 “연금수령 개시신청서”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. ✓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<u>연금지급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가능</u>하며,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. ✓ <u>세액공제</u>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<u>세액공제</u>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저축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(부분 인출 포함) <u>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 (세무서 발급)</u> 및 연금납입확인서(해당 연금계좌 취급자 발급)를 제출하여 <u>세액공제</u> 배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 (좌 등)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나목의 개정내용
---	--	---